
젊은 한국, 청년 미래를 위한 전략

청년 복지 5대 과제

2023. 9. 19.



보건복지부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그간 정책의 한계	2.
III. 5대 과제 추진 방향	5.
1. 가족돌봄청년 지원	6.
2. 고립·은둔청년 지원	7.
3. 자립준비청년 지원	8.
4. 청년마음건강 지원	9.
5. 청년자산형성 지원	10.
IV. 기대효과	11.
V. 향후계획	11.

1. 청년기(19~34세, 1,007만명)는 건강한 성년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생애전환기

- (의미) 미성년의 시기를 벗어나, 독립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
 - ^학업 및 취업, ^자산 형성, ^가족 형성 등 발달과업을 수행

▶ (청년기본법)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타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규모)약 1,007만명(총인구의 19.9%), (성별)남 52.4% / 여 47.5%, (지역)수도권 55.3% / 비수도권 44.7%

- (중요성) 청년기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은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 경제·사회활동은 국가의 경쟁력, 사회 전반 활력 제고에 결정적 역할

2.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現세대 청년들의 생애전환 어려움 가중

- (경제·고용) 기업들의 채용규모 축소, 경력·수시 위주 채용 경향, 비정형·플랫폼 근로형태 확산 등 청년 고용의 양·질이 모두 열악
 - * '23년 취업자 증가폭 축소('22년 81만→'23년 10만) 전망('23년 경제정책방향, 기재부)

- 집값 상승·고금리 등으로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 청년층의 빚투·영끌 및 위험자산 투자 급증 등으로 채무부담은 증가

* 연소득 평균 대비 주택가격 '16년 6.3배 → '21년 8.9배(주거실태조사, 국토부)

** 29세 이하 자산 대비 부채 비율 '15년 16.7% → '22년 37.1%(전연령대 1위)(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 (사회·문화) 現청년세대는 사회·경제적 조건 및 기회와 보상에 있어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나, 부모배경 등에 따른 격차·기회 불평등 심화

- 출발점의 차이는 계층의 세대 간 대물림 심화*, 청년세대 내 격차 확대**로 이어져 청년들의 박탈감 및 좌절감 야기

* 청년층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 부정적 응답비율 '09년 59.0% → '21년 74.1%(사회조사, 통계청)

** 상위 20% 청년, 하위 20% 청년 대비 자산 35.3배('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 청년들이 평범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체감도 높은 청년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고, 청년들과 함께 하는 젊은 대한민국 건설 필요

II

그간 정책의 한계

1. 기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복지

- (법적기반) 최근 「청년기본법」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 및 권익 강화를 위한 정부 책임** 등이 규정되었으나, 아직 구체적 정책 개발 미흡

*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제3조) / ** 국가·지자체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방안 마련 노력 의무(제4조),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청년 대책 포함 의무(제8조)

- (청년정책) 일자리와 취업·창업 지원 위주의 청년정책은 교육·문화·복지 등 청년기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데에는 한계

* '19.5월 기준, 청년 관련 정부사업 총 166개 중 취업·창업지원 124개, 주거금융 지원 37개, 생활복지지원 5개('21.1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2. 기존 복지체계로는 대응 곤란한 새로운 취약청년

- (청년 복지정책) 청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립이 수월하다는 인식 아래,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 복지정책 대상에서 청년은 소외
 - 일부 존재하는 청년 복지정책들도 대상(저소득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이나 규모가 제한적

<연령층별 주요 보건복지정책 현황>

		영유아	아동	청·중장년	노인	장애인
소득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아동수당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돌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다함께 돌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부 지역 한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치매 예방·관리 사업	활동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주간·방과후활동 등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드림스타트 등				
건강	신체	영유아 검진 1세미만 외래 본인부담 경감 등	아동치과주치의 15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 경감	2030 국가건강검진	노인외래정액제 노인 틀니, 임플란트	중앙·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권역재활병원 등
		예방접종(영유아, 아동, 노인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난적 의료비(중위200% 이하) 등				
	정신	전 연령 정신건강 강화 지원 등		청년마음건강센터, 마음건강바우처(1.5만명)	전 연령 정신건강 강화 지원 등	
정신건강 지원, 트라우마 심리지원 강화,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자살예방 강화						

- (新취약청년) ^전통적 취약계층(저소득층 등)과 함께, ^가족돌봄, 고립·은둔, 우울·불안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新취약계층도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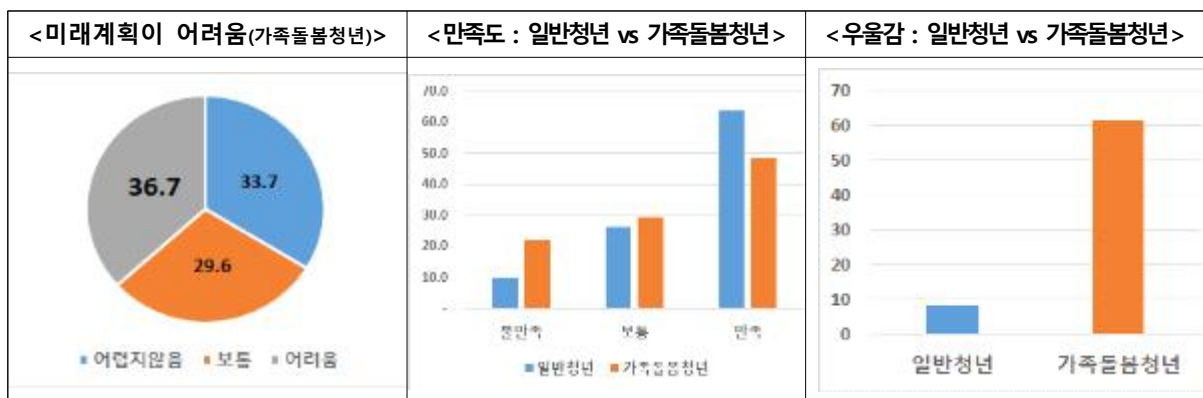
3. 취약계층 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열악

① 가족돌봄청년 : 전국 약 10만명(0.8%)

※ 13~34세 기준

- 미래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장애·질병 등) 부담으로 빈곤의 악순환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심리적 우울감도 상당한 수준

* (미래계획) 가족돌봄청년의 36.7%가 미래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 (만족도) 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22.2%로 일반청년(10.0%)의 2배 이상 (우울감) 우울감 유병률은 61.5%로 일반청년(8.5%)의 7배 이상



② 고립·은둔청년 : 고립청년 약 51.6만명(5%), 은둔청년 약 24.7만명(2.4%)

- 취업실패, 인간관계 어려움 등으로 고립·은둔*하는 청년이 전체의 5% 수준으로, 일반청년에 비해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 불량

* 고립청년은 사회적 관계지지가 단절된 청년 이 중 한정된 장소(집 방 등)에 머물러 있으면 은둔청년

* (정신건강) 18.5%가 정신과적 약물 복용 중으로, 이는 일반청년(8.6%)에 비해 2배 이상 (신체건강) 나쁘다 응답이 43.2%로 일반청년(14.2%)에 비해 3배 이상(서울시 실태조사, '22)



③ 자립준비청년 : 연간 2,000여명 보호종료, 보호종료 5년 이내 11,400여 명

-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자립수당(月 40만원)·정착금(1,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호소

* (부채) 자립준비 청년의 24%가 부채 有(평균 605만원)
(정신건강) 50%가 자살을 생각해본적 있음(33%가 빈곤으로 인해 자살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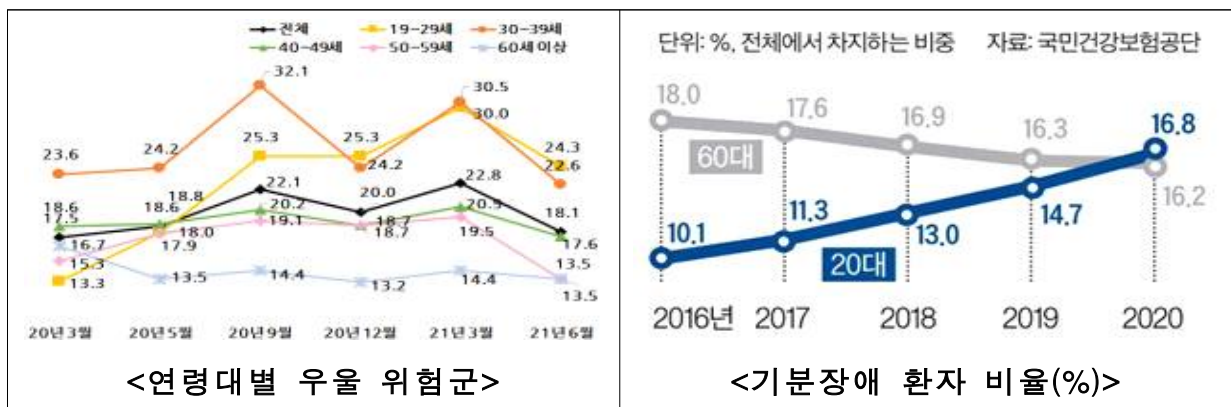
④ 청년마음건강 : 청년층 우울증상 유병률 6.1%(남 4.9%, 여 7.5%),

- 20·30대 우울위험군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 특히 코로나19 이후 20대 급격히 증가

- 청년층 2.4%가 최근 1년간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남 1.8%, 여 3.1%)

- 기분장애* 유병 환자수도 20대(16.8만명)가 60대(16.2만명)를 추월

* 기분 조절 어렵고 비정상적인 기분이 장시간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지장 초래(우울증·조울증 등)



⑤ 청년자산형성 : 2030 기초생활수급자 ^(12년)14.7만명 → ^(22년)26.9만명

- 他연령대에 비해 20·30대 자산 - 부채비율 증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저소득층 청년은 자산형성의 어려움 직면

* 자산부채비율(17년→22년) : ^(전체)18.4% → 16.7% ^(39세이하)240% → 28.1% ^(29세이하)242% → 37.1%

⇒ 약자복지 기조 아래, 도움이 가장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여 이후 생애의 어려움 가중 방지 필요

*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취약청년 실태 파악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확대

III

5대 과제 추진 방향

비전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희망**을 주는 **젊은 대한민국**



목표

- ◇ **[자립]** 청년 본인의 삶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 **[안정]** 성인기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심리·정서적 안전망** 구축
- ◇ **[출발]** 일하고 저축하며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토대 마련**

추진
과제

가족돌봄청년(10만명)

- 돌봄 코디네이터 통한 밀착 사례관리
(2,400명 대상)
- 자기돌봄비 지원
(연 200만원, 960명 대상)
-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지원
(월 1회, 2,400명 대상)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23. 51개 시군구 → ’24. 90개 시군구)

고립·은둔청년(52만명)

- 전담인력 통한 밀착 사례관리
(320명 대상)
- 심리 / 정서 지원
(320명 대상)
- 공동생활(은둔청년) 지원
(80명 대상)
- 가족 지원(640명 대상)

자립준비청년(1.1만명)

- 전담인력 확충
(’23. 180명 → ’24. 230명)
- 사례관리 확대
(’23. 2,000명 → ’24. 2,750명)
- 자립수당 인상
(’23. 월 40만 → ’24. 월 50만)
- 민간협력 강화

청년 마음 건강 (전체청년)

- 마음건강상담 이용대상 확대(청년마음건강바우처 + 전국민마음투자지원)
-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개편(검진주기 10년 → 2년, 검진항목 확대)
- 청년마음건강센터(전국 17개 시·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청년 자산 형성 (저소득 청년)

-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 개선 및 가입자 지속 확대
-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제공 연령 확대(24세 이하 → 30세 미만) 및 취약청년 소득공제 확대

추진
기반

(가칭)청년미래센터 시범 신설(4개 시·도)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전담

1

가족돌봄청년 지원 (신규)

◆ 가족 부양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전담기관·인력 통해 **확인-지원-관리**에 이르는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 '24년부터 시범사업 후 '26년 전국 확대 목표로 추진

□ (정책현황) 가족돌봄청년 대상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 실시('22.3~11월), 돌봄부담 완화, 개인 미래 준비 기회 제공 등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실태조사 결과) (돌봄현황)주당 평균 돌봄시간 21.6시간, (삶의질)삶의 불만족도 및 우울감 높음, (복지욕구)생계·의료 지원, 심리·휴식 지원 등 복합 복지 욕구

□ (추진과제) 확인·지원·관리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24년~, 4개 시도, 21억원)

○ (대상자 확인) 학교·병원·지역사회에서 가족돌봄청년 대상자 선제 파악

* (학교·병원) 가족돌봄청년 인지 강화를 위한 학교·의료사회복지사 대상 교육 실시('23.4월~) (지자체) 희망복지지원(통합사례관리) 중점 사업대상자로 포함('23.2월), 가족돌봄청년 위기지표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지역 인적 안전망 등) 통해 발굴 등

○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복합적 복지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서비스 지원) 필요에 따라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실시('23.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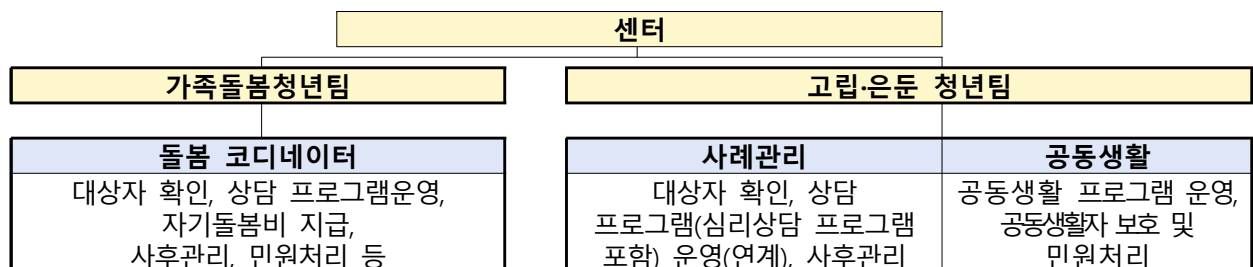
- (경제적 지원) 청년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 지원 신설**(소득기준 有)

- (정서적 지원) 돌봄 경험 공유 등 **자조 모임** 프로그램 운영

○ (관리) (가칭)청년미래센터 내 **돌봄 코디네이터(6명)** 배치하여 가족돌봄청년 선제 파악 후 밀착 사례관리(정기면담, 긴급상황 현장 출동, 기존 자원 연계* 등)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등

○ (추진기반)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 전담 서비스 전달 체계 신설((가칭)**청년미래센터**, 시·도 단위)하여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 고립·은둔청년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적응을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전담기관·인력 통해 확인-지원-관리에 이르는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 '24년부터 시범사업 후 '26년 전국 확대 목표로 추진

- (정책현황) 일부 지자체·민간에서 산발적으로 관련 사업* 운영 중이나, 규모·내용면에서 제한적, 중앙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체계 마련 시급
- (추진과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확인-유형화-지원-관리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24년~, 4개 시·도, 13억원)
 - ① (실태조사) 고립·은둔 계기, 복지욕구 등 파악 위한 전국 단위 첫 실태조사('23.~)
 - * 온라인 설문조사(전국 19~39세 5천명 대상) 및 심층 면접조사(FGI)로 진행
 - * 조사과정 중 긴급복지, 심리지원 등 필요한 자 확인 시 대상자 동의 거쳐 지원 즉시 연계
 - ② (원스톱 통합지원) 전담기관·인력 통해 ①서비스 대상자 확인, ②선정 및 유형화, ③프로그램 운영 지원, ④사후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대상자 확인) 온라인 커뮤니티, 가족·경험자·지원자 등 협력 체계 구축
 - (대상자 선정 및 유형화) 초기 상담(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개별 사례별 종합평가 및 유형화(예시: 고립위험군, 고립군, 은둔군)
 - (지원) (청년당사자) 자기회복, 사회관계,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 운영, (가족) 소통교육·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 참고 : 고립·은둔청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예시) >

프로그램명	내용
자기회복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등 마음건강회복 프로그램
사회관계	영역별 프로그램 참여(신체/예술/놀이활동/3끼 식사 등),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참여(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자조모임 등을 통한 관계형성 지원
일경험	자기계발 및 진로 탐색프로그램, 취업 지원, 청년 도전지원사업 연계 등
공동생활 (은둔청년 특화)	시간 및 일상생활 관리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가족지원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제공, 가족심리상담 프로그램, 고립·은둔청년 가족 자조모임 지원
서포터즈 활동 지원	고립·은둔 경험 청년(탈 고립·은둔 청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기반으로 고립·은둔 청년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 (관리) 서비스 종결 후 정기면담, 모임 등 통해 지속 사후관리
- (추진기반) 전담 서비스 전달체계 신설(^{가칭}청년미래센터, 시·도 단위)하고,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심리상담 포함)·공동생활관리 등 전담인력(8명) 배치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전담인력 확충, 사례관리 대상 확대, 자립수당 인상, 민간협력 확대** 등 실시

* 연간 2,000여 명 보호종료, 법령상 자립지원 기간인 보호종료 5년 이내 11,400여 명

□ (정책현황) 자립수당('1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22~) 등 정책 추진 중이며, 두 차례 종합적 대책* 마련한 바 있으나, 지원 수준 확대 필요

*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방안('21.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22.11월)

○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

-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주요내용) 자립수당(5년간 월 40만원), 자립정착금(1,000만원 이상),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확대, 맞춤형 사례관리, 바람개비 서포터즈(자립멘토단) 운영, 전용 상담콜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 (추진과제) 사회적·경제적 지지체계 강화 및 민간협력 기반 멘토링, 취업지원 등 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① (전담인력 확충) 자립준비청년 대상 일대일 지원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단계적 확충*

*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22) 120명 → ('23) 180명 → ('24) 230명

② (사례관리 내실화)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주거 임대료, 자격증 취득비, 의료비 등) 지원 대상자 확대*

* ('22) 1,470명 x 월 30만원 → ('23) 2,000명 x 월 40만원 → ('24) 2,750명 x 월 40만원

③ (자립수당·정착금 인상) 물가상승, 청년 취업난 등 생활여건 변동을 반영해 자립수당 지급액 및 자립정착금 지급 권고금액 단계적 인상

* 자립수당 지급액 변화 : ('22.8월) 월 30만원 → 35만원 → ('23) 40만원 → ('24) 50만원

* 자립정착금 변화 : ('93) 100만원 → ('05) 지방이양사업 전환 → ('17) 최소 500만원 이상 → ('22) 최소 800만원 이상 → ('23) 최소 1,000만원 이상

④ (민간협력 강화) 멘토링, 직무교육·취업연계 등 자립지원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우수한 민간 자원 발굴 및 협력 강화 추진

⑤ (실태조사) '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23.하) 결과를 토대로 신규 과제 마련 및 정책 보완 추진

4

청년마음건강 지원 (확대·강화)

- ◆ 코로나19로 악화된 청년층의 정신적 어려움(우울·불안·자살 등) 완화 위해 마음건강상담 지원 확대 및 청년마음건강센터 내실화
- ◆ 정신건강문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개편

□ (정책현황) 청년마음건강센터 전국 확대('21년 6개 시·도 → '22년 17개 시·도) 및 전국 청년 대상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중(청년마음건강바우처, '23년 57억원)

-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우울, 불안 등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 대상(만 19-34세 모든 청년) 3개월 간 총 10회(사전·사후검사 포함) 1:1 전문 심리상담 제공
- (정신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 선별검사(10년 주기, 만 20-70세 국민 대상) 실시 중
- (청년마음건강센터) 조현병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시작 5년 이내인 청년(19-34세) 대상 마음건강사업(청년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별도공간 마련 초기상담, 집단치료프로그램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 수행

□ (추진과제) 심리지원서비스 확대 신설, 청년 정신건강 선제 대응 위한 청년정신건강검진 확대 및 청년마음건강센터 이용자 확대

- ① (마음건강상담) 청년층 포함한 전연령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신설(신규 539억원, '24년 8만 명 지원 목표)
- ② (정신건강검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해 청년층(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진 확대 개편 추진('25~)
 - ▲ 검진항목 확대(우울증→조현병·조울증 추가), ▲ 주기 단축(10→2년), ▲ 사후관리 체계 구축(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③ (청년마음건강센터)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22년, 17개 시·도 설치완료)를 기반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만성화 방지
 - * 등록 전 초기상담, 정신건강 선별도구(PHQ-9, CAPE-15 등)를 통한 선별검사,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
 - 센터 전국 확대 후 본격 사업 실시에 따라 대학, 지역사회 복지자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 이용자 수 확대(22,800명 → '24,2,000명) 추진

◆ 저소득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확대 및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대상에 가족돌봄청년 추가

□ (정책현황) 저소득 가구의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저축·공제 통한 자산형성을 특화지원하여 미래 소득 창출, 위험 대비 및 자립 촉진

-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저축 통한 자산형성 지원('22.7월~)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 (내용) 월 10만원 본인저축시 정부지원 10만원(차상위 초과), 30만원(차상위 이하)
 - (만기) 3년간 본인적립 후 만기시 720만원 ~ 1,440만원+이자 등 수령
-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제공으로 탈수급·탈빈곤 촉진('17.3월~)
 - (대상) 기초생활보장 청년 수급자(24세 이하 또는 대학생, '22년말 14만명)
 - (주요내용) 근로·사업소득 공제(40만원+30%), 등록금 공제(대학 등록금 지출금액 공제)

□ (추진과제) 청년층 수요에 맞춘 제도 개선 및 지원 대상 확대 추진

- ①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 강화 통한 대상 적극 모집,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신청 통한 편의 도모 등을 통해 정부 지원 대상 지속 확대
 - (제도 개선) 가입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간 확대 등* 가입자 중심 맞춤형 지원('23.5월~)
 - * 소득기준 완화(월 200만원→ 220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부모의 소득·재산조사 미실시, 출산·육아휴직자 계좌적립중지(2년) 신설로 가입기간 연장(3년→ 5년)
 - (대상 확대) 5월 모집 후 대상 선정하여 8월 통장 개설·정부지원금 매칭 증, 現 누적 가입자 9만 명에서 지속 확대 추진(예산 ('23) 1,574억 → ('24) 2,179억)

※ 이 밖에 일반 청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금융위, 6%이상 고이자),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기업근무자), 장병내일준비적금(국방부) 등 다양한 상품이 있으며, 저소득 근로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 가능(단, 희망두배통장(서울시) 등은 중복 불가)
- ②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기초수급 청년 소득공제 및 지출요인(등록금) 등 인정
 - (대상 연령층 확대) 저소득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층 확대(현행 24세 이하 → 개선 30세 미만) 추진
 - * 「제3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24년~'26년)」 수립·발표(9.19.)
 - (취약청년 공제 확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 소득 공제* 강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액 공제** 신설
 - * 근로·사업소득의 60만원+30% 공제 신설(현재는 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 ** '24년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대상 청년 수급자의 소득 산정 시 '자기돌봄비' 지원액 공제

IV

기대효과

- (취약청년의 공정한 출발) 취약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한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출발의 기회 보장
 - (환경 개선) 청년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여 청년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 형성
 - (안전망 구축)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독립된 성인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
 - (도약 기회 보장) 청년의 경제·사회활동을 촉진하여 청년 개인의 도약과 더불어 국가 경제, 사회 전반의 발전을 도모

V

향후계획

주요 내용		'23. 3분기	'23. 4분기	'24. 1분기	'24. 2분기	'24. 3분기	'24. 4분기
가족돌봄청년	전담 전달체계 구축						
	원스톱 통합 지원 시범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실시						
고립은둔청년	전담 전달체계 구축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실시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사업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실시						
	전담인력 확충 및 사례관리 확대						
	민간협력 강화(멘토링, 직무교육·취업연계 등)						
	자립수당 인상						
청년마음건강	전국 청년 마음건강센터 운영 활성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제공						
청년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확대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제공 확대						